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6

발의연월일: 2020. 07. 30.

발 의 자:고용진・김영배・노웅래

맹성규・박상혁・박성준

박홍근 · 송영길 · 안규백

양이원영 · 윤관석 · 이탄희

이해식 • 전혜숙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피심인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피심인의 변호 인 조력권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 차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추후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 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를 각각 제50조의4부터 제50조의6까지로하고,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이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조사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인 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륟
<u><신 설></u>	제50조의3(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이 법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
	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
	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50조의4(조사 등의 연기신청)
(생 략)	(현행 제50조의3과 같음)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생	<u>제50조의5</u> (이행강제금 등) (현행
략)	제50조의4와 같음)
제50조의5(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50조의6(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생 략)	(현행 제50조의5와 같음)